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3호, 2025. 5. 20.,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집적정보통신시설 관련) 044-202-6777, 67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20. 8. 4.>

-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20. 8. 4.>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4조 삭제 <2009. 8. 18.>

제5조 삭제 <2009. 8. 18.>

-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정보통신망의 구성 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6.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제3장 삭제 <2015. 12. 22.>

제8조 삭제 <2015. 12. 22.>

제9조 삭제 <2015. 12. 22.>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정 2020. 8. 4.>

-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조에서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
 - 1.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 2.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 3. 「전기통신사업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 4.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또는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이하 "운영체제"라 한다)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 또는 제 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 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 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
-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 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본조신설 2017. 3. 22.]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2020. 8. 4.>

- 1.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 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 마.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 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사.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아. 접속정보의 위조 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 자.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
 -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3. 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제9조의6에서 같다)를 검증·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 나. 대체수단을 생성 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 다.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 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 마. 화재ㆍ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 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직 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2.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 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7. 17.]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18. 7. 17.>]

-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 · 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18. 7. 17.>]

-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6에서 이동 <2018. 7. 17.>]

제10조(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 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 (이하 "연계정보"라 한다)의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 제11조(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①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함께 연계정보 생성・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계정보 생성
 - 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직 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2.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 2.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 3.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 가.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나. 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 1.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치
 - 2.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 3.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 4. 연계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
 - 5.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보관
 - 6. 그 밖에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 ② 법 제23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연계정보 이용기관(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 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 2.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 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보관·관리
 -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 5. 연계정보 분실 도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연계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 보관
 - 7. 그 밖에 연계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 제14조(운영·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자
 -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자

[본조신설 2025. 5. 20.]

-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 ·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 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7일 전까지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1. 실태점검의 근거 및 목적
 - 2. 실태점검 일시
 - 3. 실태점검자의 인적사항
 - 4. 실태점검의 내용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25. 5. 20.]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 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제16조의2 삭제 <2020. 8. 4.>

제17조 삭제 <2020. 8. 4.>

제17조의2 삭제 <2020. 8. 4.>

제18조 삭제 <2020. 8. 4.>

제18조의2 삭제 <2020. 8. 4.>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3. 삭제<2020. 8. 4.>
- 4.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20조 삭제 <2011. 9. 29.>

제21조 삭제 <2011. 9. 29.>

제22조 삭제 <2011. 9. 29.>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8., 2011. 8. 29.>

-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 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 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29., 2012. 9. 14.>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한다.
-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방송법」제2조제3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8, 29.>
 - ②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2014. 11. 28.>

제30조 삭제 <2014. 11. 28.>

-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8. 29.>
 - 1. 성명
 - 2. 주소
 - 3.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 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 1. 28.>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1. 28.>
 -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6. 9. 22, 2019. 6. 11.>
 -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 편주소 등의 연락처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9. 22.]

-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개정 2011. 8. 29.>
 -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 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 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③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항에서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 2.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
 - 3.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본조신설 2025. 5. 20.]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25. 5. 20.>]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 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 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44조의 9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받아야 한다.
 -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8.]

[제35조의2에서 이동 <2025. 5. 20.>]

-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 12. 8.>
 - 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⑥ 삭제<2011. 9. 29.>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란 별표 1의3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설비・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 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설비・장비
-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설비· 장비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20. 12. 8.>]

-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환경
 - 2. 제1호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그램, 콘텐츠 등 자산 중 보호해야 할 대상의 식별 및 위험성
 - 3. 보호대책의 도출 및 구현현황

[본조신설 2012. 8. 17.]

[제3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20. 12. 8.>]

-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①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제3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5로 이동 <2020. 12. 8.>]

-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또는 원격점검(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6조의3제1호에 따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안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8.>
 -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 1. 사전점검 준비
 - 2. 설계 검토
 - 3. 보호대책 적용
 - 4. 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
 - 5. 사전점검 결과 정리
 - ③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터넷진흥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5. 2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제3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5는 제36조의6으로 이동 <2020. 12. 8.>]

- 제36조의6(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규모
- 2.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참가하는 자의 전문성
- 3.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기간

[본조신설 2012. 8. 17.]

[제3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6은 제36조의7로 이동 <2020. 12. 8.>]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12. 7., 2024. 12. 3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 가.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3)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 억원 이상인 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 나. 이사(「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다.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②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2. 7.>
- ③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2. 7.>
- ④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위로 하고,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업무는 같은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개정 2021. 12. 7., 2022. 8. 9.>
-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3.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1. 12. 7., 2023. 12. 26.>
- ⑥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자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상근(常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개정 2021. 12. 7., 2022. 8. 9.>
- 1.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그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9. 6. 11.]

[제3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20. 12. 8.>]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6. 11., 2021. 12. 7.>

[본조신설 2014. 11. 28.]

[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20. 12. 8.>]

- **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9. 6. 11.>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 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교육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능력 및 전문성 향상
 - 4. 정보통신서비스 보안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 5.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2. 8. 17.]

[제36조의8에서 이동 <2020. 12. 8.>]

-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3. 7. 3.>
 -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 터 이상인 자
 -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것
 -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28.,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6. 11., 2021. 12. 7., 2023. 7. 3.>

-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 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7. 3.>

[제목개정 2023. 7. 3.]

- **제38조(보험가입)**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 8. 29., 2019. 6. 11., 2020. 12. 8.>
-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

-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1. 연속해서 30분 이상
 - 2.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 ②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내용
 - 3. 응급조치 사항
 - 4. 대응 및 복구대책
 - 5. 향후 조치계획
 - 6.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
 -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

- 제41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
 - 2.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제40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보고하고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이 경우 보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7. 3.]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민법」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 정성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3. 그 밖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

제43조 삭제 <2012. 8. 17.>

제44조 삭제 <2012. 8. 17.>

제45조 삭제 <2012. 8. 17.>

제46조 삭제 <2012. 8. 17.>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절차・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 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 3.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 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 4.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
- 5.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명세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제4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이하 "관리체계인증고시"라 한다)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 ③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6. 5. 31.>
- ④ 인증심사는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신설 2016. 5. 31.>
- ⑥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 ⑦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인증신청을 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 ⋅ 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개정 2012. 8. 17.]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53조로 이동 <2012. 8. 17.>]

- 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종전 제48조는 제53조의2로 이동 <2012. 8. 17.>]

-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5. 31., 2024. 7. 23.>
 - 1.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 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3.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 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종전 제49조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2012. 8. 17.>]

-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자
 - 가. 호스팅서비스(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나.「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 비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 제4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 제4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4.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본조신설 2024. 7. 23.]

제50조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로 이동 <2012. 8. 17.>]

-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 5. 31.>
 -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31.>
 -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2017. 7. 26.>
 - 1.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 8. 17.]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삭제 <2012. 8. 17.>]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송장・광고 등에 표시・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 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17.]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1조로 이동 <2012. 8. 17.>]

-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 할 것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 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교육·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 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17.]

[제목개정 2016. 5. 31.]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2조로 이동 <2012. 8. 17.>]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7.,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2.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전문화 정도 등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2017. 7. 26.>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7.,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2. 8. 17, 2013. 3. 23, 2017. 7. 26.>
- ⑤ 삭제<2012. 6. 25.>

[제목개정 2016. 5. 31.]

[제48조에서 이동 <2012. 8. 17.>]

-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8. 17., 2016. 5. 31.>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17.>

[제목개정 2016. 5. 31.]

[제49조에서 이동 <2012. 8. 17.>]

-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17. 7. 26.>
 -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제목개정 2016. 5. 31.]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4조의2 삭제 <2022. 12. 9.>

- 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2020. 12. 8.>
 - 1.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 3.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 4.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 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55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관리등급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신청・심사 및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 48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제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의2와 같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 1. 28., 2020. 12. 8.>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침해사고 확산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 로만 해당한다)의 차단 요청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정·보완한 프로그램(이하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배포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 게재 요청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해사고 예보・경보의 전파
- 4. 국가 정보통신망 안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
-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
 - 28., 2010. 10. 1., 2011. 8. 29., 2013. 3. 23., 2017. 7. 26.>
 -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3.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 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4. 정보보호산업에 종사하는 자 중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제조자
-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방식에 적합할 것
 - 2.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훼손・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3.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암호기술을 적용할 것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할 것
-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 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3.]
-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일시・방법・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3.]

- 제59조(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3.>
 - ②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제1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부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3.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 4.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조사단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원인조사반과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분석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사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인조사반과 검증분석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다른 반을 둘 수 있다.
- ④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과 제4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보고해야 한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단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해산할 수 있다.
- ®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9.]

-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 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 ② 법 제48조의4제6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4. 8. 13.>

[전문개정 2022. 12. 9.]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인터넷진흥원
 -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의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0. 12. 8.]

-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시해야 한다.
 - 1.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정보보호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 3. 그 밖에 정보보호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정보보호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해야 한다.
 -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자에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⑥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성질·형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보완 요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 2.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시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다)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 3.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설비와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출 것
 - 4.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출 것
 -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층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인증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그 지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재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전년도 인증시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 ③ 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 1. 제6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시험 의 실시 의뢰,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의 공고
 - 2. 제60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및 정보보호인 증의 공고
 - 3. 제60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약점 보완 검토 및 취약점 보완요청서 발송 지원 [본조신설 2020. 12. 8.]
-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 2.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
 - 3.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 4.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 게 통지하는 방법·절차

[본조신설 2022, 12, 9,]

-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경찰청장・ 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사유
 -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신설 2014. 11. 28.>
 -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11. 28.>
-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11. 28.>
-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전송자의 명칭
 -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 3. 처리 결과

[본조신설 2014. 11. 28.]

-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 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 1. 전송자의 명칭
 -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 11. 28.]

-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 "란 휴대인터넷 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 8. 29.>
-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6에 따라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이하 "광고차단・신고 소프트웨어등"이라 한다)을 개발・보급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광고차단・신고 소프트웨어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9. 1. 28., 2020. 8. 4.>
-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 회는 법 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 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 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52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0. 1.>
- ⑤ 인터넷진흥원은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2호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0. 8. 4., 2024. 7. 23.>
- 1.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
- 2.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
- 3.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
- 4.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20. 8. 4.>

[제목개정 2010. 10. 1.]

제66조 삭제 <2020. 8. 4.>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 3. 28.>

제66조의2(등록요건)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28., 2024. 12. 31.>

-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 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 3. 납입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66조의3(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7.>
- 1. 정관
- 2.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5.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27.>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4. 2. 27.>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27.>

[본조신설 2008. 3. 28.]

- **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7. 9. 5.>
 -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본조신설 2008. 3. 28.]

제66조의5(행정처분) ① 삭제 <2015. 12. 2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08. 3. 28.]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8. 3. 28.]

-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9.,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2018. 12. 11.>
 -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 2. 거래금액
 -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
 - 4. 거래일시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8. 31.>
-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신과금서 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14. 11. 28., 2021. 1. 5.>
- ④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14. 11. 28.>

[본조신설 2008. 3. 28.]

[제목개정 2014. 11. 28.]

[제66조의8에서 이동 <2018. 12. 11.>]

- 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2. 요청대상 결제내역: 결제에 사용된 전화번호, 결제일시 및 금액
 - 3. 개별 재화 또는 용역별로 구분 기재된 구매자정보를 요청한다는 내용
 - 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청서에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제공 요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종전 제66조의8은 제66조의7로 이동 <2018. 12. 11.>]

-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1. 1. 5.>
 - 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 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통신과 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6장의3 국제협력 <신설 2008. 3. 28.>

제67조 삭제 <2020. 8. 4.>

제7장 보칙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28., 2011. 8. 29.>
 -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삭제 < 2012. 8. 17.>
-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횟수・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1. 9. 29., 2013. 3. 23., 2017.
 -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09. 1. 28.]

-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 28.,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 1.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0. 1. 27.>
-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69조의3 삭제 <2020. 8. 4.>

제69조의4 삭제 <2020. 8. 4.>

-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3. 28, 2008.
 - 7. 3., 2010. 10. 1.,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2018. 9. 28., 2019. 6. 11., 2019. 6. 25., 2021. 12. 7., 2023. 7. 3.>
 -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
 - 2의2.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0. 8. 4., 2021. 12. 7., 2023. 7. 3.>
-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 1의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
-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
-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 8.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0. 8. 4.>
- 1.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 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및 공표명령
- 2. 법 제50조,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08. 3. 28., 2010. 10. 1., 2011. 9. 29., 2012. 8. 17., 2014. 11. 28., 2020. 8. 4.>
- 1. 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 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 ⑤ 삭제<2020. 8. 4.>

[제목개정 2021. 12. 7.]

-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2.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4. 2. 27.]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0. 3. 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7. 7. 26., 2018. 12. 11., 2019. 6. 11., 2020. 12. 8., 2021. 12. 7., 2023. 7. 3.>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 2.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 3.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 4.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 5.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 6. 제5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 7.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 8. 제66조의2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 9. 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 ③ 삭제 < 2016. 12. 30.>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2. 27., 2025. 5. 20.>
-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본조신설 2013. 12. 30.]

제72조 삭제 <2010. 12. 27.>

제73조 삭제 <2009. 8. 18.>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0, 1.]

부칙 <제35533호,2025. 5.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9 제2호도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